

자원순환 이야기

2차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경제적 유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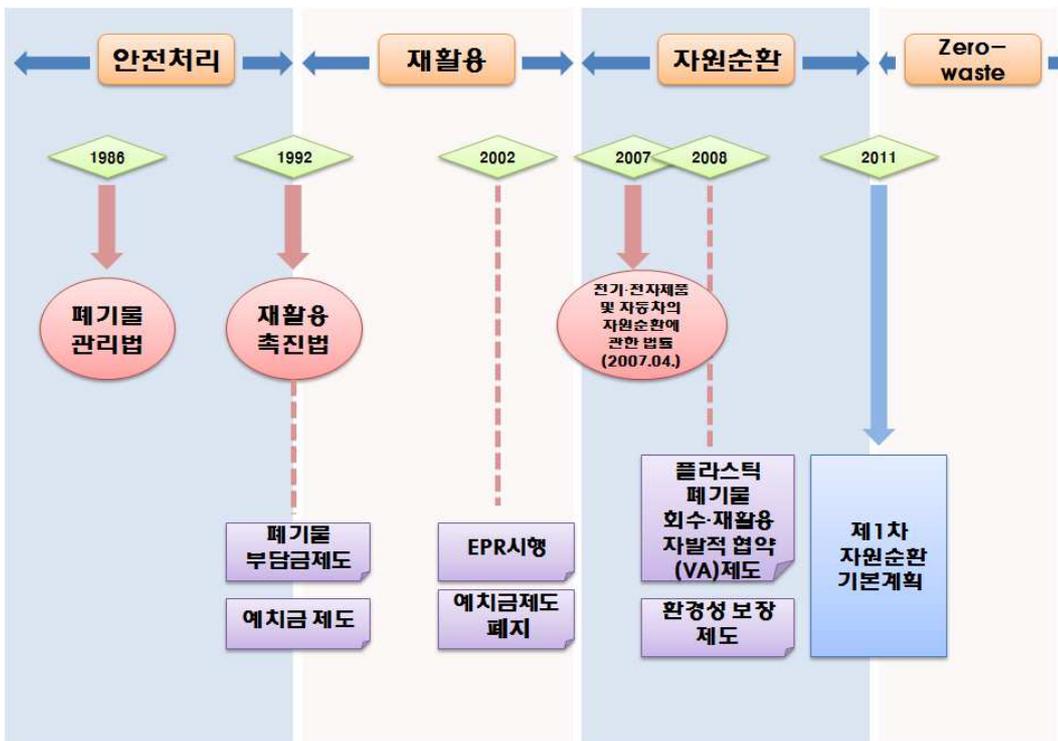
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경제적 유인제도 추진의 필요성

- 지난 세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매립이나 소각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운용은 ① ‘환경비용의 지출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② ‘매립장이나 소각장의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의 발생’ 그리고 ③ ‘이들 시설과 관련된 국민적 불편이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문제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의 사회에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폐기물의 감량및재활용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폐기물의 감량및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이라는 정책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러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 중 중요한 것들로는 (i) 폐기물부담금 제도 (ii) 예치금제도 (iii)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iv) 자발적협약제도 (v) 환경성보장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그럼 먼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왔던 폐기물재활용 촉진 관련 제도의 변천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경제적 유인제도의 변천사

(2-1) 폐기물 관리 정책의 변화 - 도표

[그림] 폐기물 관리 정책의 변화



폐기물 회수 처리비 예치금 제도

○ 우리나라는 폐기물부담금제도와 함께, 1993년부터 ‘폐기물 회수 처리비 예치금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회수 처리비 예치금 제도’란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용기 중 지정한 제품·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제품·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매년 예치하게 하고, 이후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회수 처리비 예치금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되어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표] 폐기물 관리 정책의 변화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자발적협약	환경성보장제도
근거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목적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 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 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 여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포 장재의 폐기물에 대하 여 일정량의 재활용의 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 용 이상의 재활용부과 금을 생산자에게 부과 하는 제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 수입업자(사업자 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재활용 용이성 제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폐기 시까지 의 전 과정에 걸쳐 체 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 도하는 제도
시행 시기	1993 시행	2003 시행	2008 시행	2008 시행
의무 대상 품목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담배 등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그 포 장재	-제품·포장재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의무 대상자	-대상품목의 제조· 수입업자	-대상품목의 제조· 수입업자 -대상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	-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 업자(사업자 단체 등을 포함)	-전기전자제품제조·수 입업자, 판매업자, 재 활용업자, 수거운반자 등 -자동차제조·수입업자, 폐차업자, 재활용업자 등
부담금 종류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부과금

3.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경제적 유인제도 종류별 상세설명

○ 앞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왔던 폐기물재활용 촉진 관련 제도의 변천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된 제도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폐기물부담금제도

먼저, 199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살펴봅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하나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폐기물 관련 정책들 중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필요성]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비용부담원칙(the 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환경비용을 부담시켜 생산및유통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한편 발생한 폐기물의 회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폐기물 관리에 관련된 환경비용의 절감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범규정]

구체적으로,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 제 12조에서는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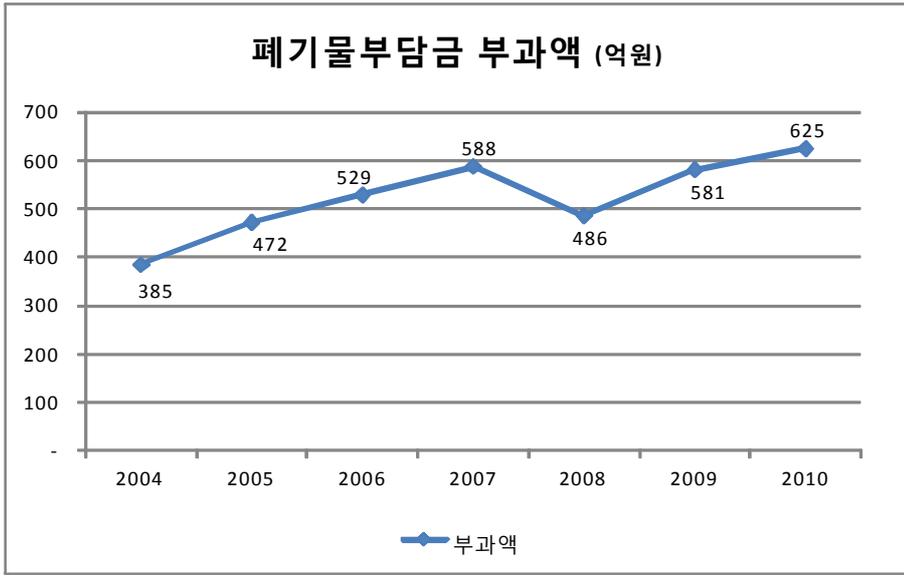
1993년에 도입된 후 부과대상, 산출기준 등이 변경되어 왔으며, 2009년 현재 살충제·유독물제품 용기, 부동산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부담금 징수 방법]

제조업자는 출고실적에 대하여 매년 4월 부담금이 일괄 부과되고, 수입업자에게는 수입실적에 따라 수입시 수시로 부과됩니다.

○ [폐기물부담금 부과액 규모]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은 2010년 현재 약 625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활용]

징수된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등에 사용됩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면제]

- 한편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의 지나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 감면 조치는 2단계에 걸쳐서 도입되었습니다.
- 2003년 매출액 기준 감면 조치 도입 : 먼저 2003년에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또는 수입액 미화 9천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 2008년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 기준 감면 조치 추가 : 이후 2008년부터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만킬로그램 혹은 수입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100킬로그램에 해당하는 폐기물 부담금에 대해서도 감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품목 (산출기준)		08~09	10~11	12~
살충제·유독물 용기	가. 플라스틱 ○ 500ml 이하 ○ 500ml 초과	살충제 7원/유독물 6원 살충제 16원/유독물 11원	14.94원 18.42원	24.9원 30.7원
	나. 유리병 ○ 500ml 이하 ○ 500ml 초과	11.24원 16.86원	33.72원 50.58원	56.2원 84.3원
	다. 금속캔 ○ 500ml 이하 ○ 500ml 초과	10.78원 15.64원	32.34원 46.92원	53.9원 78.2원
부동액(ℓ)		37.96원	113.88원	189.8원
껌(판매가/수입가)		0.36%	1.08%	1.8%
1회용 기저귀(개)		1.2원	3.3원	5.5원
담배(전자담배의 경우 카트리지가, 20개비)		7원	7원	7원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일반	30원	90원	150원
	건축용 (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 포함)	15원	45원	75원

▶ 폐기물부담금 = 제품의 출고량 × 부과 요율 × 부담금 산정지수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08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단, 증가세인 꺾 제외)

3-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¹⁾)의 개요]

- 우리나라는 자원재활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1992년부터 폐기물예치금제도의 형태로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생산자는 제품의 재질·구조 및 포장개선을 통한 폐기물 감량과 제품 판매망을 이용한 역회수(逆回收)·재활용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산자를 폐기물 공동배출자로 규정하고 폐기물 책임을 소비자나 정부로부터 생산자로 확대하는 제도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입니다.
- 즉,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소비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EPR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제는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단계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1)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의 범위					
	생산	판매	소비	처분	재활용
EPR 이전	●	●			
EPR 이후	●	●	●	●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의의]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품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소비 및 폐기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ing)을 촉진하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를 촉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는 독일, 영국, 프랑스, 헝가리 등 유럽국가 대부분을 포함하여 체코, 헝가리 등 동부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브라질 등 남미지역까지 제도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 2011년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품을 보면, 타이어, 윤활유 용기, 형광등, 양식용부자, 전지, 전자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포장재로는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의약품, 화장품류 등’의 포장에 사용된 ‘금속캔·유리병·종이팩·합성수지포장재’ 등이 포함됩니다.

[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2011년 기준)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어 - 윤활유 용기 - 형광등 - 양식용부자 - 전지(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자제품(TV,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휴대폰, 오디오,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포장재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의약품, 화장품류 등의 포장에 사용된 금속캔·유리병·종이팩·합성수지포장재

자료: 2011 환경백서, 환경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 의무생산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재활용의 의무를 갖는 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는 원료제조업자, 제품제조업자, 포장재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 매우 다양한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는 재활용의무를 지는 생산자 즉,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제품(가령 윤활유 용기, 타이어, 전자제품, 전지 등)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됩니다. 반면, 포장재(가령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경우에는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내용물 생산자 및 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됩니다.

[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 의무생산자

분류	재활용의무생산자
<p>제품 (타이어, 윤활유 용기, 형광등, 양식용부자, 전지, 전자제품 등)</p>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p>포장재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의약품, 화장품류 등의 포장에 사용된 금속캔·유리병·종이팩·합성수지포장재)</p>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내용물 생산자 및 수입업자

자료: 2011 환경백서, 환경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 재활용의무량 및 재활용부과금]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아래에서는 먼저 '품목'별로 연간 재활용의무율이 산정되며, 일단 재활용의무율이 산정된 후 생산자들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개별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 결정됩니다.
- 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목표량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재활용부과금'은 품목별로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1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활용 미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에 재활용목표를 초과달성한 의무생산자는 초과 실적량을 저축해 두고 2년의 기간 동안 의무이행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 최근년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재활용의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012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12년도 재활용의무율
금 속 캔	철 캔			0.786
	알루미늄캔			0.786
유 리 병				0.778
종 이 팩				0.341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단일	무색	0.806
	텔레프탈	재질	유색	0.806
	레이트병	복합재질		0.806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781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23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664
	기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0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0.600
		단일·복합재질		
운할유용기				0.790
윤 활 유				0.722
타 이 어				0.762
형 광 등				0.300
수산물 양식용부자				0.277
전 지 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60
	리튬전지			0.650
	니켈·카드뮴전지			0.400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16
	니켈수소			0.203
전기·전자제품	텔레비전			0.272
	냉장고			0.267
	세탁기			0.317
	에어컨디셔너			0.027
	개인용컴퓨터			0.153
	오디오			0.200
	이동전화단말기			0.356
	복사기			0.160
	팩시밀리			0.156
	프린터			0.150

자료: 환경부고시 제2011-196호

3-3)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제도(VA)

○ [도입 이유]

- EPR 제도를 도입했지만, 플라스틱 제품 중 EPR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이나 수거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적절한 재활용율을 달성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한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새로이 만들어진 제도가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제도(VA)’입니다. 즉,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제도(VA)는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제도(VA)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품목 및 재활용의무량]

- 2011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에는 1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인 프로파일·바닥재가 출고량 45만여 톤 대비 재활용량 6만3천여 톤으로 협약 품목 중 출고량과 재활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 한편, 18개 협약품목의 재활용의무량 평균은 9,726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체 18개 품목 중 PE관(79.4%), 로프·망(91.1%) 및 청소기(56.7%)를 제외한 15개 품목이 의무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VA) 재활용의무량

(단위 : 톤, %)

품목	재활용의무량 (a)	재활용량 (b)	재활용달성률 (b/a*100)
계	175,077	179,785	102.7
프로파일·바닥재	61,743	63,807	103.3
PE관	6,874	5,454	79.4
PE영농필름	15,236	15,522	101.9
파렛트·컨테이너	19,002	19,716	103.8
전력 및 통신선	17,499	18,133	103.6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13,549	13,554	100
PVC관	12,082	12,566	104
로프·어망	5,394	4,914	91.1
비료포장재	2,759	3,798	137.7
곤포사일리지	2,281	2,892	126.8
산업용PE필름	6,348	6,356	100.1
김발장	699	744	106.4
청소기	683	387	56.7
정수기	2,378	2,557	107.5
청정기	847	1,002	118.3
비데	649	703	108.3
필터	2,674	3,162	118.3
자동차AS용범퍼몰딩	4,372	4,509	103.1

자료: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2011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으로 1,834억 아꼈다', 2012년 7월 23일.

o [자발적협약(VA)제도 도입의 효과]

- 자발적협약제도를 통한 자원재활용 및 경제적편익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자발적협약제도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량은 2011년 현재 약 18만톤에 달합니다.
-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제도 도입 첫 해인 2008년 759억 원에서 2011년에는 1,834억 원으로 연 평균 358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편익은 ① 매립·소각 처리 절감 비용 484억 원 ② 재활용시장에서 재생가치를 가지고 유통·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VA) 제도의 효과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협약사업자	777개	685개	504개	412개
재활용량	17만9천톤	14만5천톤	10만5천톤	6만9천톤
매립(소각) 처리비용 절감	484억원	392억원	275억원	189억원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1,350억원	1,070억원	816억원	570억원
고 용 창 출	1,269명	920명	701명	490명
폐기물부담금 면제액	479억원	420억원	140억원	100억원
온실가스 감축효과	202천CO2톤	167천CO2톤	111천CO2톤	24천CO2톤

자료: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2011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으로 1,834억 아꼈다', 2012년 7월 23 일.

- 또 자발적협약 이행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 약 479억 원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는 2011년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출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1,835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것과 유사한 효과에 해당합니다.
- 자발적협약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자발적협약제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20만CO2톤에 달합니다. 특히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플라스틱 재활용량은 159%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감축효과는 7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환경성 보장제

여기서는 환경성 보장제에 대하여 환경부가 2011년에 발간한 환경백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o [우리나라의 환경성 보장제 도입 경위]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까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사전재활용성 제고 및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을 위한 관리지침을 시행하였으나 실효성이 미흡하였고, 사후관리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이루어져왔습니다.

이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 후 적정 재활용토록 제품의 전과정을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2007년 4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또 이 법을 바탕으로 2008년 1월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생산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촉진 등을 제도화한 환경성보장제를 시행하였습니다.

○ [환경성 보장제의 정의]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적절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시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적 부하를 최소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환경성보장제도 대상품목]

- 환경성보장제도의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환경성보장제도의 대상품목

구분	대상품목
전기·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 - 냉장고 - 세탁기(가정용) - 에어컨디셔너 - PC(모니터 및 자판 포함) - 오디오(휴대용 제외) -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프린터 - 복사기 - 팩시밀리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인 이하) -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출처: 한국환경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 [환경성보장제도의 의무대상자]

- 환경성보장제도의 의무대상자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재활용업자, 수거운반자 등이며, 또 자동차제조·수입업자, 폐차업자, 재활용업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 [환경성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환경성보장제도의 도입으로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이 저감 되고 재활용 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②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유해한 제품의 수입억제로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③ 내수시장에서 국내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물론, ④ 재활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국내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며 ⑤ 유해물질처리비용 절감, 재활용률 증가, 프레온가스 회수·처리, 매립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약 3,760억원의 경제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해외의 환경성보장제도의 도입 동향]

- EU 등 선진국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제품정책(IPP : Integrated Product Policy)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량이 급증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한 다수의 제품 및 제품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자원유효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더하여 지난 2001년부터는 TV와 냉장고, 컴퓨터를 비롯한 가전제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재활용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강화된 시행수단을 수반한 재활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 및 재활용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자동차 설계 시 유해물질의 제거와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설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률제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유럽연합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정책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에서도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의 법률이 제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와 호주, 브라질, 홍콩, 대만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정책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2011 환경백서, 환경부, 2011

2010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201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1.

'2011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으로 1,834억 아꼈다',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2012년 7월 23일.

한국환경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환경부, 2011.